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125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

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6. 5.

판결 선고2024. 6. 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,

가. 원고와 B(C생)이 2023. 3. 28.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20,484,258원1) 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 및 주위적으로, 주문 제1의 나.항과 같다. 예비적으로,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23. 3. 29. 접수 제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B이 한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
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,
원고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 및 가액배상(그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서의
거래가액 이하로서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리금임)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, B에게 위
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진영현

별지

- 1) 19,359,803원과 그중 19,359,725원에 대한 2023. 9. 15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6. 5.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원 미만을 버린 돈인 1,124,455원을 합한 돈이다.